
第14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都市整備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6年12月13日(金) 午前10時

場所 都市整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7年度市有財産管理計劃案
 2.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

審査된案件

1. 1997年度市有財産管理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3面
-

(11時 開議)

○委員長 金錫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定期會 제4차 都市整備委員會를 개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案件은 1997년도 市有 및 公有財産管理計劃에 대하여 議會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2건입니다.

아무쪼록 會議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年度市有財産管理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金錫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市有財産管理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住宅局長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제안설명하기 전에 同僚委員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한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財務經濟委員會에서도 역시 같이 委員會를 하고 있습니다.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 산하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市有財産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住宅局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住宅局長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課의 課長들 3개 課만 가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住宅局長 산하에 있는 3개 課長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同僚委員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감사드립니다.

서울特別市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부지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시범아파트 및 중산층시범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소관 시유잡종재산으로서 이촌시범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206번지 27호 등 10개 필지에 6,383㎡이며, 중산층시범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211번지 2호 등 6개 필지 4,695.5㎡로

모두 16개 필지 11,078.5㎡입니다.

부지매각경위는 1969년도에 우리 시가 중산층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범아파트사업의 일환으로 용산구 이촌동에 시범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건물준공당시 즉 70년도 6월 30일에 지적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계획서에 지적 확정 및 소유권자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일지구 아파트입주자 공동지분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대지처분방법을 명시한 후에 계약하여 건물만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71년도 10월 6일 지적이 확정되고 아파트건물 소유자들이 同 敷地에 대한 매수를 신청함에 따라 계약이행차원에서 매각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地方財政法施行令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9조제3호에 의거 현 매수신청자와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매각금액은 地方財政法施行令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公有財産管理條例제7조에 의한 市 公有재산심의에서 사정한 가격을 시장이 최종가격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地方財政法施行令 제100조제1항에 의거 일시불 납부가 곤란할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市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本 管理計劃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金錫浩; 수고했어요.

그러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 梁在大입니다.

97年度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同 案件은 96년 10월 29일 의안번호 606번으로 議會에 접수되어서 都市整備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토지 11,078.5m² 부지에 이촌동시범아파트 228세대 및 중산층시범아파트 266세대가 1970년도에 건립되어 준공되었는데 분양 당시 同 敷地에 대하여는 地籍未確定 等の 이유로 추후 대지처리방법만을 분양계약서 제4조에 아파트부지의 지적확정 및 소유권자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동일지구 아파트 입주자 공동지분으로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후 건물만 분양한 상태에서 현재 건물소유자 494세대 중 479세대는 분양을 동의하였으며, 15세대는 미동의 상태인바 분양계약서 제4조에 의거 매수신청이 있어 계약이행 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매각예정토지는 한강제방 건립시 매립지역으로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지적이 미확정되어 토지분양이 안 되었던 관계로 토지소유자 등이 70년 분양 당시, 또는 76년 지적확정시의 고시가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분할 매각토록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중산층시범아파트 경우 96년 7월 11일, 이촌시범아파트의 경우는 96년 5월 27일 매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계약 이전에 무상 또는 70년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하라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청구를 하려는 수순으로 사료되나 현 건물 소유주 대다수가 우리 시에

매수신청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이행차원에서 관련법과 條例에서 정하여 된 관련 절차를 계약 이전까지는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1조제1항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議會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산의 매각방법, 매각금액, 대금납부방법 등은 地方財政 關聯 法令과 關聯 條例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 사항으로 이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專門委員 수고했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住宅局長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富 委員님 질문하여 주세요.

○李容富 委員; 李容富 委員입니다.

局長께서는 중산층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의 매수신청을 금년도 7월 11일하고 5월 27일 매수신청을 요구받았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李容富 委員;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언제 서울市長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市長님께 보고드리고 결재 받은 날이 금년 10월 2일입니다.

○李容富 委員; 10월 2일 市長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보고가 아니라 결재를 득했습니다.

○李容富 委員; 결재 내용이 지금 뒤에 보니까 시유잡종재산

매각방침이라는 결재를 득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 494세대 중에서 479세대가 매수신청을 5월 27일 하고 7월 11일 요청했는데 10월 2일 市長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그 동안 무슨 연유 때문에 이 지역의 민원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였나요?

○住宅局長 邊榮進; 이것이 경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었고, 또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될 작업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즉 무상양여나 또 계약당시의 가격으로 분양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李容富 委員;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이것이 1970년대 당시에 건립되어서 준공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것이 장기 민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검토받고, 또 이러한 오늘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렇게 計劃案을 마련한 데까지의 노력한 흔적은 엿볼수 있으나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議會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案을 마련하는 것들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住宅局長 邊榮進; 정확한 회차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89회인가 90회 의회 때 常任委員會에서 이 사안을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李容富 委員; 그 당시 보고드린 사항을 지금 다시 한 번 말

씀해 보세요.

그 당시 보고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저희 委員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때도 지금 드린 내용처럼 동일하지는 않지만 골자에 관한 한은 다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지금 이 아파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업무가?

○住宅局長 邊榮進; 아직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추진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이루어 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容富 委員;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추진위원회 같은 주민조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李容富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同 件의 민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民選時代에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또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현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꼭 어떤 회의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나 또는 우리 常任委員會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의견을 조정해서 보다 더 나은 계획을 입안하는데 업무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住宅局長도 지금 본인이 설명한 것을 잘 기억이 안 나지요? 마찬가지로 이를 떼면 나든 안 나든 관계 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건으로 인한 보고했노라고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다른 同僚委員, 李成浩 委員 질문해 주세요.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계기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청운아파트가 시민아파트이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그 청운아파트의 재건축조합에서 國家로부터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국유재산이 92.3%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地方警察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 그 중에 대부분인데 國有財産法에 보면 공공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해서 조합에게 불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죠, 그리고 5년 분할납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地方警察廳에서는 지금 불하를 안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청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E급은 없더라도 D급이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도 위험한 건물이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도는 높아질텐데 市民의 안전문제도 그렇고, 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市에서 시민아파트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警察廳에서는 서울시가 현재 조합부지로 돼 있는 부지를 가져가고 대신 면허시험장이나 또는 파출소 부지를 맞바꾸자고 하고 있거든요. 또는 서울시가 안 가져간다면 中央政府의 山林廳이나 기타의 다른 기관에게 맞바꾸어서 그들로부터 불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國家機關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주민에게 불하를 해 줄 수밖에 없도록 法이 돼 있으니깐 일거리만 떠맡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실정이고, 특히 또 國有財産法에 서로 國家機關間에 또는 地方政府間에 재산을 바꿀 때는 사용용도나 가격이 비슷한 경우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바꾸자고 하고 있는 무리한 일을 계속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재건축사업이 완전히 딜레마에 봉착한 실정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시면서, 또 住宅局의 주요업무가 주택관련 업무이니 만큼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미 2년이 지나게 되면 그전에 사전결정했던 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市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조합측에게만 맡겨둔다라고 한다는 지금 전혀 방법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住宅局長 邊榮進; 재건축사업은 민간 수익사업으로 성격상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委員님께서 적시하신 해당 규정을 적용해서 불하받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警察廳에

서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은 시민 아파트의 정리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局長님께서서 우리 주택관련 업무 主務局長이시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면 재개발한다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합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안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市長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해서 서울地方警察廳이 바라는 바대로 서울地方警察廳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또는 警察廳에서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과 맞바꾸어서 서울시에서 현재 조합부지는 불하를 해 달라 이런 요지의 청원을 지금 낸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지난번 監査中에 풍치지구 내에 현행 조례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다음 常任委員로 넘겼었는데 종전에 위배된 정도를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얏트호텔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으로도 용도변경 됐는데 풍치지구에는 유흥주점 같은 것 허가를 못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그것이 주용도는 관광호텔이고, 관광호텔의 부대되는 부속시설로서의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建築法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점 같습니다. 주용도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풍치지구 내에는 관광호텔이 현행 규정

상으로는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섰기 때문에 주용도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되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그렇다고 해서 숙박시설 보다 유흥음식점 시설이 더 커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 지적하신 법리에 따라서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용도 부속용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라면 특히 관광사업의 진흥이 國家施策上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면 그것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타워호텔의 경우는 용적률이 100.2%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층에 제한하고 건폐율 30% 보면 용적률이 90% 여야 되는데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죽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증축된 사례가 있거든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것이 3층에 30% 건폐율이니까 90%의 용적률이라고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실정법상은 용적률에 대해서 따로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워호텔이 층수에서 기존건축물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한 용적률에 대한 다른 제한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용적률이라고 해서 규정된 것은 없는데 건물 높이에 관한 규정하고 건폐율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용적률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아닙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풍치지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도 그렇고, 이것이 현행 조례대로 하면 90% 용적률이 지켜지겠습니다만

이미 기득권이 인정된 기존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달리 용적을 제한을 어겼다고 지적하기에는 법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증축이나 또는 일부 개축을 하더라도 기존에 위반된 정도를 심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住宅局長 邊榮進; 가령 층수나 건폐율을 어겼다면 그것은 허가가 안나가겠습니다만 기존 층수 범위 내에서, 기존 건폐율 범위 내에서, 또는 30%의 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이라면 그것은 위반된 정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법리상 허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李成浩 委員;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기 보다 이것이 일반 주택의 경우 굉장히 건축행정이 까다롭고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텔이나, 학교나, 여관이나 이런 곳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풍치지구 내에 건축이 되어 있고, 또 주용도가 그렇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되어서 반해서 풍치지구 내의 일반주택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실정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住宅局長 邊榮進; 본래 풍치지구 관리 취지에 맞게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75년도 이후에만 조례로 건축관련 규제가 명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전에도 일제시대 이후부터 꾸준히 풍치지구 관련한 건축규제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이름이기는 하겠지

만 죽 있어왔다라고 局長님도 지난 건축조례개정할 때 주장 하였고,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법률적 근거를 갖는 규정이 지침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은 것이 사실입니다. 찾으려 했던 것은 대부분이 75년도부터, 말하자면 조례로 명문화가 됐기 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不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일제부터 풍치지구는 건축규제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법령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죽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았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局長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住宅局長 邊榮進; 풍치지구 내 건축제한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73년도에 마련이 돼 있어서.....

○李成浩 委員; 60년대에는 없었습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주민들은 일제시대 이후부터 죽 못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풍치지구 내 사시는 분들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그 때 지어진 건물들이.....

○住宅局長 邊榮進; 관련규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李成浩 委員; 아뇨, 50년대 60년대 풍치지구 관련규정도 말입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풍치지구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사실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고 하는 1937년도에 마련된 法에서부터 규정이 돼 있었고 그에 따른 규정인데 그때 건축규제 내용은 지금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규제 목적을 갖고 지구로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李成浩 委員;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풍치지구 지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건축규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꾸준히 그와 관련해서 건축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住宅局長 邊榮進;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72년도 建築法이 제정되면서 상당한 분량을 조선시가지계획령 대로 받아왔지만 지구운영에 대해서, 바꾸면서 지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밀어넣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62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10여년 동안은 조례나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기존의 관행대로 건축규제를 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住宅局長 邊榮進; 관행이라기 보다는 풍치지구 외에 다른 같이 없혀진 지역이나 다른 도시계획사항으로 규제가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條例가 아니더라도 建築法이든 다른 施行令이든 또는 규칙이든 다른 형태의 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풍치지구에 관련한 규제들을 꾸준히 해 온 것이 사실 아니냐 이것이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2년도 建築法 제정하면서 그것을 지구의 條例로 미뤄놓고 그 사이에 條例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백기간 중에 우리가 저희들 문서로서 확인한 것은 73년도에 건축제한지침이라는 것을 행정내부 예규로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는 73년도부터 규제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공백기간 중에는 풍치지구 말고 그 외에 같이 없혀졌던 주거지역내의 건축제한

지침을 따랐다면지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成浩 委員; 하여튼 제가 관련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서 최초의 풍치지구 지정되고 지금까지 확인된 73년도 이후의 것 말고 그 가운데에 벌써 한 30년 가량은 어떤 법령을 통해서 건축규제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네.

○李成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金周喆 委員님 질문해 주세요.

○金周喆 委員; 지금 동부 이촌동이나 서부 이촌동에 시영아파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것이 70년대에 지어졌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지어지기는 69년도입니다.

○金周喆 委員; 7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金周喆 委員; 그 지역은 수해민들이 한강백사장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住宅局長 邊榮進; 69년도에 분양을 한 후에 분양 당시에.....

○金周喆 委員; 대지관리말이에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러니까 시유지로 계속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金周喆 委員; 글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료를 내든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임대를 했던간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관리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시유지로만 관리하고 있었지, 별도의 사

용료 또는 대부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에 분양을 하면서 채권시효의 기간인 5년분에 해당되는 사용
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周喆 委員; 本委員이 질문하는 것은 그 동안에 70년대부
터 무상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
까?

○住宅局長 邊榮進;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周喆 委員; 局長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 사이에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불찰로서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는 재산관리를 하
든, 또 시민의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을 전혀 기본대
로 그 동안에 관행 자체가 이런 점들은 지금 현재 市에서 市
有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를 지금까지 하나도 못한 것
아닙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그렇
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채권시효에 해당되는
기간인 5년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71년도에 지적이 확정된 후에 72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매
각을 못한 이후에 87년도에 부지매각안내문을 다시 보낼 때
까지 한 15.6년간은 사실 이 업무가 조금 방치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습
니다.

○金周喆 委員; 局長, 지금 局長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執行部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本委員이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업무상 불찰이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 불찰의 정도가 심해서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역시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야 될 일이고, 업무가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本委員이 그 지역을 제가 한강로2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런데 지금까지도 각 지역에서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소급해서 지금 地方自治制度가 실시되니까 이제는 5년을 소급해서 지금 고지서를 다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 땅은 지금 한두 평도 아니예요. 3,000평 이상되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金周喆 委員; 이런 땅을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전혀 세금도 안 내 보내고, 사용료도 안 내고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들을 믿고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봐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되고 아직도 거기는 고지서 안 내보냈어요.

○住宅局長 邊榮進;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추진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되었던 것을 처리하면서 분양을 추진하면서 5년.....

○金周喆 委員; 일단 사정이야 어쨌든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려면 시유지에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돈 받은 것 다 돌려 주어야지요, 그 동안 낸 것을.

○住宅局長 邊榮進; 그래서 그러한 질문말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려고 하다가 도중에 막으셔서 답변을 못 드렸습시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 걸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말씀과 똑 같게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또 달리 말씀은 그 사이에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와 달리 이 건의 경우는 서울시가 서울시 부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했고, 또 분양 당초에 계약서에 대부료에 대해서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일부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행정처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5년의 변상금을 물리는 것하고 달리 취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周喆 委員; 局長,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건물을 분양한 것은 사용료를 안 내도 되고, 또 어쨌든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땅 사서 집을 짓기 어려워서 비어 있는 땅 20년, 30년, 50년 된 땅을 20년 전에 깔고 있었던 땅은 그 동안에 사용료를 계속 물고, 市에서 하는 것은 인심행정하는 것이예요, 지금?

○住宅局長 邊榮進;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金周喆 委員; 아파트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에 지은 것 아니예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시유지에 지은 것입니다.

○金周喆 委員; 시유지에 지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대우를 해 준 것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달리 취급하겠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예요?

○住宅局長 邊榮進;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이
고, 이 건의 경우는.....

○金周喆 委員; 승낙해서 점유했기 때문에 거기는 봐 준다?

○住宅局長 邊榮進; 봐 준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변호사의
해석이 당초 계약서에 대부료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金周喆 委員; 그러면 변호사가 받지 말라면 받지 마는 것이
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런 변호사의 해석도 있었다라는 점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金周喆 委員;局長은 최소한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
떤 시유지가 되었든지, 누구에게 갔든지, 어느 특정인에게 갔
다 하더라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本
委員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그런 뜻의 질의라면 위원님과 동감입
니다. 형평되게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이 사안은 상황이 조금 틀렸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혹시 형평치 못하게 행정처리하는 것
으로 이해하시게 했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형평되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金周喆 委員; 지금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
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金周喆 委員; 그런데 매각은 어떤 형태로 매각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20년 전의 땅값으로 치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이 들어왔지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金周喆 委員; 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땅의 세금도 안 내고 가옥세만 내고서 그냥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에요? 매각할 기준을 두었을 것 아니에요?

○住宅局長 邊榮進;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가시점을 과거의 분양 당시로 돌려달라고, 혹은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따로 쟁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달리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金周喆 委員; 이런 것들이 전체가 형평에서 벗어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 크고, 또 권력 있고, 민원에 시달리기 싫고 이렇게 행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각하는 것도 어떤 지역에 3평이나 4평 사려고 하면 내가 팔아먹는 것보다 비싸게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땅 장사 했어요.

체비지가 되었든 뭇 했든 사유재산을 마구, 살림살이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고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런식으로 그 동안에 관행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이런 민원이 생기고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거치상환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서민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못 낸다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라든지, 1년에 얼마씩이라도 기준을 두어서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사용

료 하나도안 받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 동안에 이런 이촌동과 같이 매각하는 문제나 전 서울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지나 국유지 깔고 앉아 있는 부분들을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 주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局長이 지금 답변한 그대로 형평에 맞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두어서 할 적에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本委員이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가 됐든, 과거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든 형평에 맞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보편타당성 있는 쪽으로 局長께서는 행정을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本委員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住宅局長,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리해서 내가 해볼게요.

住宅局長은 아까 李容富 委員이 질문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9월부터 議會의 우리 委員會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住宅局長 邊榮進; 90회 臨時會 10월 25일입니다.

○委員長 金錫浩; 그러면 그 때부터라도 임대료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야 어떻든 간에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住宅局長 邊榮進;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委員長 金錫浩; 어떻든 변호사 하기 전에 서울시 행정을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변호사 묻기 전에 우선 사용료를 부과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다는 자체부터도 의혹이 짙다고 이 부분에서는. 왜 물어

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住宅局長 邊榮進;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委員長 金錫浩;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누락을 시킨 것을 몰랐다고 치자 이거야, 90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알았으니깐 그 때부터는 부과를 시켰어야 된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유가 없어요.

○住宅局長 邊榮進; 변상금 징수에 관련해서 변호사 세분한테 물었는데.....

○委員長 金錫浩; 글썄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가 판사가 아니니까, 해놓고 청구 들어오면 소송할지언정.

○住宅局長 邊榮進;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것 같아서.

○委員長 金錫浩;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들?

○住宅局長 邊榮進; 상당히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었더니,

○委員長 金錫浩; 주어진 여건대로, 주어진 여건이 뭐냐, 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주어진 여건 아니요, 집행에 대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완벽한 행정을 한다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 받았습시다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5년 동안 부과를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住宅局長 邊榮進; 단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錫浩;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토요일에 한 후 18일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2.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48分)

○委員長 金錫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住宅局長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감사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지어 사업구역 내 시유지를 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제때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 내 세입자가 임대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고말씀 드리는 재산관리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住宅改良促進에關한臨時措置法 제5조 규정에 의거 무상양여 대상의 국유지를 서울시 토지로 취득하여 아울러 재개발사업에 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으로 20개 구역 9,131가구, 또 국유지 무상양여 취득 1개 구역 70필지 7,715㎡, 시유지 매각에는 18개 구역 2,925필지 46만 1,067.62㎡입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내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住宅局長 수고했어요.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6년 11월 26일 의안번호 644번으로 저희 議會에 접수되어 저희 委員會에 11월 28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7년도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우리 議會에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듯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할 재산으로 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신당 5구역 등 20개 구역의 토지, 건물 9,131가구이고, 국·공유지 무상양여의 경우 1개 구역에 70필지 7,715㎡이며 처분할 재산으로는 시유지 매각으로 무학1구역 등 18개 구역 2,925필지 46만 1,067.62㎡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

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내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복리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住宅改良促進에關한臨時措置法 제5조 규정에 의거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사업 재원을 확충코자 함인데, 市長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동시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사항이 대체로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신당 5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97년 예산 중 우리 委員會 예비심사시 임대아파트 매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므로 이의 수정이 필요하고, 신정 6-1구역과 신정 6-2구역의 사회복지관매입비의 경우 96년도 불용예산 중 사업변경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나 사회복지관 등 부대시설 매입은 금번이 처음으로 여타 재개발구역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錫浩; 專門委員 수고했어요.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住宅局長을 상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朴贊國 委員;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朴贊國 委員 질문해 주세요.

○朴贊國 委員; 朴贊國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96년도 불용예산 중 사업변경이라든지, 신정 6-1구역과 신정 6-2구역의 사회복지관 매입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住宅局長 邊榮進;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신당지구의 경우는 사업지연이 우려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신정지구의 사회복지관 매입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 말씀으로 이해 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신당지구가 사업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은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꼭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계획을 넣는 것이, 일단 委員님들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신정지구의 경우는 세입자들이 모두 1,500여 세대가 집단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주민 편익시설이 꼭 제공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것을 사유재산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區廳에서 확보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주민들이 확보할 것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혜가구가 무척 크다는 것, 또 수혜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는 것, 또 이것이 저희들이 사유재산으로 관리해서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공공시설지원 범위에 法的으로 확실히 들어가 있다라

는 점을 생각해서 첫번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오히려 더 확대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마 지 않습니다.

○朴贊國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錫浩;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錫浩; 住宅局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재산에 대해서 동부이촌동 206번지 27호 외 다수 필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도 그렇고, 또 그동안 執行部가 형평에 어긋나게 행정을 펴나간 것도 그렇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오늘 중으로 전부 22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지에 나가는 것은 차후 우리 委員들끼리 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할테니까 현지 나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住宅局長 邊榮進; 네.

○委員長 金錫浩; 적극적인 자세로 천백만 市民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執行部 公務員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8分 散會)

○出席委員

金錫浩 金洛淳 白懿宗 具哲會
김장주 金周喆 朴相根 朴洙桓
柳德烈 李康珍 李成浩 李容富
金芳任 朴贊國 趙旬衡 李斗鶴

○專門委員

梁在大

○出席公務員

住宅局長 邊榮進